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인제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24년 05월 0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심**	심** 1960-10-0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219번길	재등록
전**	전** 1968-08-0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40번길	재등록
정**	정** 1973-03-1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자작나무숲길	재등록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담당자 : 이기숙 문의전화 : 033-460-2578)

2024년 04월 26일

인제읍장 인

